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2. 29(월)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 회부일자 : 2016. 04. 14(목)
- 상정일자 : 2016. 04. 27(수) 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평창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오정희)

- 본 조례안은 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복지사업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업무위탁 관련 내용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복지사업에 대한 보조조건,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각각 규정 하였음.

○ 검토 결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평창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사업
2. 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제5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 및 돌봄
2. 휴식 및 이동편의
3. 재활 및 자립

4. 역량강화 및 취업
5. 인식개선
6.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7. 학대 및 성폭력 예방
8. 장애인단체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복지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장애인
2. 법 제58조에 따른 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3. 법 제63조에 따른 군 소재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단체 또는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개인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제4호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보조조건) 군수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이를 지급 받은 기관·단체 등 및 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 및 시설은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응해야 한다.

제10조(준용) 복지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그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복지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